

4. 情報産業 關聯法規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행정조직 관 련	○ 행정업무전산화추진 규정 ○ " 시행규칙	1982. 1.28 대통령령 제10709호 1983. 7.12 대통령령 제11169호 1982. 7. 3 총리령 제261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전산화를 종합적이며 체제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설 치, 운영 및 업무개발등 전산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전산화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보통신 관 련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1983.12.30 법률 제3686호 1984. 9. 1 대통령령 제11495호 1986. 3.17 대통령령 제11872호 1984. 9. 1 체신부령 제758호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운영과 공중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발전 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 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전기통신기본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1991. 8.10 법률 제4393호 1984. 9. 1 대통령령 제11494호 1987. 7. 1 대통령령 제12196호 (유선통신관리법시행령) 1984. 9. 1 체신부령 제757호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함을 정하여 전기통신의 효율적 인 관리를 기하고 그 발전을 촉 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전기통신공사업법 ○ " 시행령	1976. 4. 6 법률 제2893호 1987.11.28 법률 제3950호 1976. 9.10 대통령령 제9457호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7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기통 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 고 전기통신설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률 ○ 전산망 보급확장과	1986. 5.12 법률 제3848호 1991.12.14 법률 제4439호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 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 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규칙	1992. 6.30 대통령령 제13674호 1992.10. 7 체신부령 제847호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 시행세칙	1982. 5.24 대통령령 제10828호 1982. 6. 1 과학기술처 고시제2호	과학기술진흥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이용기술의 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전파관리법	1961.12.30 법률 제924호 1989.12.30 법률 제4193호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무선통신의 발전을 기하고 전파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통신개발연구원법 ○ " 시행령	1987. 11.28 법률 제395호	통신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통신 및 통신관련 분야의 정책, 조사, 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이를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통신정책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 " 시행령	1981. 3.14 법률 제3385호 1989.12.27 법률 제4150호 1981.10.17 대통령령 제11937호 1986.12. 6 대통령령 제12005호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
	○전산망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989. 4.25 체신부령 제812호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기술 기준을 정함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 " 시행령	1991.12.14 법률 제4438호 1992. 8.11 대통령령 제13707호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정보통신 육성,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프로그램 관 련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1987.12. 4 법률 제3984호 1988.10.20 대통령령 제12538호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에 널리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1986.12.31 법률 제3920호 1987. 7.24 대통령령 제12218호 1987. 8.25 총리령 제328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저작권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1957. 1.28 법률 제432호 1986.12.31 법률 제3916호 1959. 4.22 대통령령 제1482호 1987. 7. 1 대통령령 제12194호 1987. 7. 1 문화공보부령 제194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공업발전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1986. 1. 8 법률 제3806호 1989. 3 25 법률 제4092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6. 6.28 대통령령 제11937호 1986 7. 1 상공부령 제709호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정보산업 기술관련	○과학기술진흥법 ○ " 시행령	1967. 1.16 법률 제1864호 1977.12.16 법률 제3011호 (정부조직법) 1969.10.21 대통령령 제4166호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체제의 확립과 재정조치의 강구에 관한 사항을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1973. 5.16 대통령령 제6676호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에 기여
	○국제기술협력규정	1985. 2.21 대통령령 제11634호 1987. 4.10 대통령령 제12139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력의무와 재외 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술개발촉진법	1972.12.28 법률 제2399호 1989. 3.25 법률 제4092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고 국내기술의 수출을 진흥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 시행령	1978. 4.12 대통령령 제8941호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 시행규칙	1978 4.28 총리령 제205호 1987. 2.14 총리령 제322호	
	○기술용역육성법	1973. 2. 5 법률 제2474호 1983 12.31 법률 제3691호 (외자도입법)	국내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 " 시행령	1977. 7.16 대통령령 제8632호 1987.12 31 대통령령 제12342호	
	○ " 시행규칙	1977. 8.17 총리령 제193호 1982.10 18 총리령 제265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1986. 5.12 법률 제3851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보급 등을 합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 시행령	1987. 3.19 대통령령 제12094호	
	○ " 시행규칙	1987. 4. 9 총리령 제324호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 시행령	1973.12.31 법률 제2671호 1981. 3.30 법률 제3404호 1974. 6.13 대통령령 제7178호 1989. 7.14 대통령령 제12748호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기 타	○기술용역대가기준	1975. 4.30 공고 1988. 8. 6 개정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함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	1989. 4.24 과기처고시 제89-3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86. 3.28 체신부령 제776호 1986. 9.30 체신부령 제78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
	○전산망조정위원회 운영규칙	1987. 5.27 위원회규칙 제1호 1989. 7. 4 개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자파장해검정규칙	1990. 9. 3 체신부령 제825호	전자파관리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과 법 제2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 행정전산망추진에 관한 규칙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과학기술기금운용규정	1969.10.21 대통령령 제4167호 1978.11.27 대통령령 제9210호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금융기관전자제산조직의 도입에 관한 협의세칙	1985. 2.21 시행	금융기관의 전자제산조직의 도입에 관한 기준 및 협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세계저작권협약 (UCC)	1952. 9. 6 배포 1971. 7.24 개정	각 계약국의 문화·학술·예술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 및 여타의 모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 소프트웨어수입추천		
	○ 전자 및 전기제품의 국산개발소요부품 수입추천요령	1988. 1. 8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81호 1989. 4. 1 " 제100호 * 1989. 9. 1 전자협동조합으로 이관	전자·전기제품의 국산개발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추천요령을 정함으로써 동제품의 국산개발을 촉진
	○ 중고컴퓨터수입추천	1988. 9.19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97호	국산공급이 불가능하고 기계의 성능이 보장된 제품으로서 중고품목 수입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품목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986 5.12 법률 제3848호
개정 1991. 8 10 법률 제4393호(전기통신법)
개정 1991 12.14 법률 제443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
2. “전산망사업”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의 개발, 전산망의 구성·유지·보수,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처리·보관·전송업무 및 전산망과 관련된 기타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①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고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관 등의 전산망 개발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
3. 전산망사업 지원·육성
4.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개체의 개발과 실용화
5.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6. 기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체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망조정위원회의 설치)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참여 등) ① 체신부장관은 전산망

의 개발보급과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망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전산망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의 범위와 사업참여 및 사업기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추진 등) ① 체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의 지급·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 등의 관리) ①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 등의 보급) ① 체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단체의 지원·육성) ①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 등을 하는 전문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육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한국전산원의 설립) ① 정부는 전산망과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표준화, 전산망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의 지원, 국가기관 등의 전산화촉진 및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1.12.14법4439>

② 전산원은 법인으로하며,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전산원의 정관변경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전산원의 설립,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산원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

나 대부할 수 있다

⑤ 전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산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기술기준의 제정) ①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설계, 구성 및 유지보수가 제1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닐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 2(전산망에 관한 표준화의 추진) ①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전산망사업자 또는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12.14법4439)

제15조(기기의 형식승인) ①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기의 형식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기기의 종류 형식승인 기준, 형식승인의 방법 등 형식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기기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기기는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체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기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기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국가기간전산망의 개발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전산망의 구축 등 전산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전산망사업자를 지정하여 미리 사업을 추진하게 하거나 관련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과 기기의 공급에 소요된 자금은 정부가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업자의 지정절차, 사업의 추진과 기기의 공급방법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관련기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상의 협조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 등) ①

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시설 및 그 유통구조의 자동화를 위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정, 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8조(시범사업) ① 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재정, 기술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산교육의 확대) 정부는 국민의 전산망에 관련된 기초지식 및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전산교육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한국정보문화센터의 설립) ① 정부는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이와 관련한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센터(이하 “정보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3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은 정보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원”은 이를 “정보센터”로 “한국전산원”은 이를 “한국정보문화센터”로 본다.

(본조시설 91.12.14법4439)

제20조(공동연구개발 등의 장려) 체신부장관은 전산망과 관련된 동일 또는 동종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의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공동기술도입이 정보화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세제·금융 등의 지원) 정부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산망사업자에게 세제·금융, 행정, 법제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전산망의 안전성 등) ① 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산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전산망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전산망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전산망사업에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국가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 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 2.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 3. 국가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로운 행위

4. 범죄행위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24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① 체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망 이용자 또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① 전산망 사업자는 전산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1.12.14 법4439)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1.12.14 법4439)

제27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
- 2. 정보화사회의 인식제공을 위한 홍보활동
- 3. 전산망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 4. 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제공
- 5. 전산망을 위하여 체신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6.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위탁) 체신부 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 또는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1.12.14 법4439)

제30조(벌칙) ①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1.12.14 법4439)

② 전산망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1.12.14 법4439)

제30조 2(벌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1.12.14 법4439)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0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1.12.14 법4439)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면제) 체신부장관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단체·전산원·정보센터·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1.12.14 법4439)

제32조 2(과태료) 제13조 제6항(제19조의 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 제5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산원·한국정보문화센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91.12.14 법4439)

제3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전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전산원의 원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한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고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91.12.14 법44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센터의 설립위원) ① 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정보센터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보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정보센터의 회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

에는 해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보센터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센터는 이 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센터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보센터가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정보센터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정보센터는 그 설립당시 센터의 직원을 정보센터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2항 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49호
 개정 1989 4 4 대통령령 제12680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 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1992 6 30 대통령령 제13674호

제1조(목적) 이 령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국가기간전산망”이라함은 국가기관 등이 그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3. “총괄기관”이라함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의 및 예산의 확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함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을 말한다.
5. “이용기관”이라함은 국가기간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국가기관 등을 말한다.
6. “전담사업자”라 함은 전국적 대규모의 전산망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가 제20조의 2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추진사업·공동추진사업 및 독자추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라 함은 상당한 기술과 인력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가 제20조의 2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추진사업 및 독자추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행계획의 실시시기 및 방법
3. 기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89.4.4 대통령12680, 92.6.30 대통령13674)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상환
4.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도입 및 개발
5. 전담사업자 및 전문기관의 지정
6. 국가기간전산망간 또는 국가기간전산망과 다른 전산망과의 접속

7.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 제도의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 등과 전산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 등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⑤ 임기가 있는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9조(분야별 추진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가 기간전산망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 각호에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89.4.4 대령12680)

- 1. 총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2.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3. 이용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4. 전담사업자

③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된다.

④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89.4.4 대령12680)

- 1.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의 수립
- 2. 분야별 전산망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추진실적 평가
- 3. 분야별 전산망사업의 감리요청 및 그 결과의 처리
-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산시설의 활용, 인력의 지원 및 새로운 전산시설의 도입 및 설치에 대한 검토
- 5. 전담사업자 및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검토 및 관련기기의 일괄공급에 대한 검토
- 6.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7. 기타 행정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조(수당)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업참여대상자)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참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산망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기술인력을 10인 이상 보유한 자 (개정 92.6.30 대령13674)
-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개정 91.12.31 대령135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범위, 사업참여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2.6.30 대령13674)

제13조(사업참여의 절차) ① 체신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대령13674)

②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참여대상자 중에서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대령13674)

③ 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할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① 체신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전산망의 개발 및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설비 또는 기술 등의 지원 기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6.30 대령13674)

② 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또는 부설연구소
5. 기업의 부설연구소
6. 기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제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급대상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
2.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및 기기
3. 국내에 도입된 외국의 첨단기술 및 기기
4. 기타 체신부장관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및 기기

제17조(전문단체의 지원 및 육성) 체신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

에 관한 기술개발·인력양성·홍보 등을 하는 전문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전산망사업자 및 다른 전문단체의 기술 및 기기의 활용 알선
2. 전산망에 관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외국의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 알선

제18조(한국전산원의 업무) 한국전산원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2.6.30 대령13674)

1.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3. 국가기관 등의 전산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
4.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5.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중 시범사업 개발업무의 지원
6. 기타위원회, 분야별 추진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제19조(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등) ① 정부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전산원의 양여 또

는 대부의 계획에 의한다.

②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령에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등)

① 정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전산화계획을 통합·조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을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개정 89.4.4 대령12680)

1. 행정전산망
2. 교육연구전산망
3. 금융전산망
4. 국방전산망
5. 공안전산망
6. 기타 위원회가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전산망

제20조 2(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구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대상업무의 성질과 정보의 공동활용범위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구분한다.

1. 우선추진사업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산망사업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

한 사업

나. 관계 국가기관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다. 전국 규모의 사업

라. 전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

마. 정보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동추진사업

우선추진사업외에 국가기관 등의 공통업무 및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독자추진사업

이용기관의 고유업무 및 보안관련업무를 대상으로 주관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89.4 4. 대령12680)

제20조 3(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구분) 국

가기관 등의 장은 전산망사업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진한다.

1. 우선추진사업

총괄기관·주관기관 및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전담사업자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2. 공동추진사업

주관기관이 총괄기관 및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전담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3. 독자추진사업

주관기관이 전담사업자·전문기관 또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활용하거나 주관기관이 직접 추진

한다. (개정 89.4.4 대령12680)

제20조 4(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절차)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관분야의 전산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종합한 후 분야별 전산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산망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산화 범위·사업추진 일정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분
- 2. 전산망 구성방법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 구축방안
- 3. 소요자금 등 자원조달방안 및 이용자의 교육·훈련
- 4.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④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확정된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4.4 대령12680)

제21조(전담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① 국

가기관 등의 장이 전담사업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담사업자는 소관 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당해 국가기관 등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국가기관 등의 장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는 우선추진사업에 관한 계획에 한한다.

②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 ①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사업은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청의 행정전산망사업은 교육부장관이 종합 추진한다.

②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4.4 대령12680, 91.2.1 대령13282, 91.7.1 대령13413)

제23조(미리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은 제20조의 2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20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추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연도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소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매년 투자자금 등이 명시된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

① 정부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가 행정전산망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산원은 감리를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감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 시험기술, 망의 설계·운영, 사업총괄 등 공통경비로 사용된 자금은 총괄기관의 예산에 계상하고 업무개발 및 시험운영에 직접 사용된 자금은 주관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9.4.4 대령12680)

제25조 2(행정사무의 표준화 협회) ①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행정서식 및 각종 행정코드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3(국가기간전산망의 감리에 관한 규정)

① 감리는 회계분야의 감리와 기술분야의 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한국전산원은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담사업자의 요청으로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정기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주관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은 감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를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89.4.4 대령12680)

제25조 4(기기의 일괄공급) ① 정부가 법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간전산망 내부 또는 상호간에 호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간전산망에 관련된 기술의 도입과 기기의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상 경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가기간전산망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전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
2. 단말기기 및 주변기기
3. 전기통신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기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기

(본조신설 89.4.4 대령12680)

제25조 5(기기의 설치에 관한 심의 등) ① 국가기관 등이 제25조의 4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용 표준다기능사무기기 등 위원회가 정하는 기기의 설치의 경우

에는 사전검토 및 심의·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기간의 호환성 및 표준화 계획에의 부합여부
2. 분야별 전산망 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에 대한 장애여부

② 기기의 설치에 관한 심의기간은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이 설치협의 요청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조정인 경우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파괴된 전산시설의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 또는 심의·조정을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6(정보의 이용체제 구축과 공동활용)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전산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이용체제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공동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20조 내지 제2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의 추진과 제25조 5의 규정에 의한 기기설치의 심의·조정을 할 때 정보이용체제의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다른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국가기관 등은 정보의 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4.4 대령12680)

제25조 7(전산망개발결과의 공동활용) ①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 개발의 결과를 유사업무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결과를 다른 기관에 전수하도록 개발한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전수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4.4 대령12680)

제25조 8(전산시설의 공동이용) ① 한 기관의 전산시설을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전산시설 설치기관의 장에게 전산시설의 공동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산시설 설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시설을 공동이용할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설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4.4 대령12680)

제26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체신부장관이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산망 구성을 위한 시험적 사업

-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사업

- 3. 학술연구 및 학습자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

- 4 기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사업

② 체신부장관이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 2.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취급하는 전산망사업자(사업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전산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 2. 정보의 불법한 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 3. 전산망사업자가 취급중 취득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 4. 기타 보안업무 규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29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26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협회의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공제활동과 그 분담금에 관한 사항

제30조(협회의 운영) ①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3.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운용 및 공제활동

②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주요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결사항
5. 위탁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1조(협회의 감독)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때

제32조(위탁) ① 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등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2.6.30 대령13674)

제34조(시행규칙)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및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9.4.4 대령12680)

부 칙

① (시행일) 이 령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국가기관 등의 전산망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

가기간전산망사업으로 본다.

③ (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령 시행 당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9조 제2항 제3호의 전담사업자로 본다.

부 칙

(89 44 대령12680)

① (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업무전산화 추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92 630 대령13674)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1992 10 7 체신부령 제8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망사업참여대상자의 기술인력의 범

위) 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통신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통신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기사 1급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 분야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통신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기사 2급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 분야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전자공학·통신공학·전자계산학·정보공학·경영정보학 및 이와 유사한 분야(이하 “전자공학 등의 분야”라 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
5. 전자공학 등의 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당해 분야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전자공학 등의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7.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자공학 등의 분야의 근무경력이 9년 이상인 자

제3조(전산망사업참여신청) ① 령 제12조 제1

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전산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망 사업 참여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확인 서류의

사본

3.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자현황 보고서

제4조(전산망사업참여대상자 명부) 체신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서류의 사실여부를 심사한 후 그 기재내용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산망사업 참여대상자 명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기재번호

2. 회사명

3. 사업자현황

제5조(전산망사업자에 대한 지원) 체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